

2020.01.21

##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입안 계획 안내

### I. 개요

관세청 내 세관장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일부 품목의 제외,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### II. 주요사항

#### 1. 개정 사유

-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**신규 품목 지정** 및 일부 품목의 제외·변경 사항 반영
- **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 기준 완화**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성실 기업 지원
-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

#### 2. 개정 내용

□ 수출 : (현행) 11개 법령 1,194개 → (개정) 13개 법령 1,210개

□ 수입 : (현행) 35개 법령 4,647개 → (개정) 40개 법령 4,941개

##### □ 가축전염병 예방법 (수입)

- **미생물 배양체,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, 육류 함유 또는 사용한 조제품** 세관장확인물품 대상 **추가**
- **식용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번데기** 세관장확인물품 대상 **제외**

##### 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(수입)

- 비상 공기 호흡 장비를 구성하는 고압가스 용기,  
즉 **호흡용 기기,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수입되는 고압 가스 용기** 신규 **추가**

2020.01.21

##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입안 계획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(수입, 수출)

- 신규 항정신성의약품(에트클로르비놀, 클로랄베타인 등) 신규 대상 **추가**
- 마약류(GHB, 프로포폴 등)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수출입 요건 **삭제** 및 신규 대상 **추가**
- 마약류, 원료물질 추가,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, 오탈자 수정 등 요건 수정

##### 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(수입)

- 성형목탄, 합판, 마루판 등 통관 절차 완료 전 수입신고 및  
검사 대상품목 지정으로 통관 전 규격·품질검사 신규 대상 **추가**

##### □ 사료관리법 (수입)

- 사료용 꽃가루의 식용 둔갑 등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신규 대상 **추가**

##### □ 산업안전보건법 (수입)

- 청석면, 백석면 등 유해물질, 크레인, 공작 기계 등 위험한 기계·기구 등  
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연계된 물품 신규 대상 **추가**
-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,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에 대한  
'대체품 개발 시까지 수입금지 적용 제외' 해당 규정 **삭제**

##### 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(수출, 수입)

- 원료물질(우라늄, 토륨,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 
포함된 물질)과 공정부산물 신규 대상 **추가**

2020.01.21

##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입안 계획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수입, 법령 신규)
  - 염색제, 가습기용 향균 소독제제 등 직접 인체에 노출되고 빈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규 대상 **추가**
- 수상생물질병 관리법 (수입)
  - 양식용 새끼뱀장어, 냉동 굴 신규 대상 **추가**
  - 건조·염장한 닭새우류, 바닷가재 등 지정검역물 비해당 품목 요건 **삭제**
  - ‘살아있는 것으로서 이식용, 식용, 관상용, 시험·연구조사용 수입’ 요건 내용 추가를 통한 지정검역물 범위 명확화
- 식물방역법 (수입)
  - 흙이 부착된 붉은 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미가공 석재류, 중고 농기계·건설기계 신규 대상 **추가**
  - 카레, 구약구 뿌리 등 식물방역법 상 가공품에 해당 시 요건 **삭제**
  - ‘생활용품, 욕실용품 등 제외’ 등 검역대상 제외 품목 등 요건 수정 반영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(수입, 법령 신규)
  - 인명 피해 위험성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,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신규 대상 **추가**
-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(수입)
  -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(온열팩, 젓꼭지, 리코더 등 학용품, 물감·퍼즐 등 완구) 신규 품목 **추가**

2020.01.21

##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입안 계획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(수입, 법령 신규)

- 저효율 제품의 불법 수입 차단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한 **삼상유도전동기** **추가**

□ 원자력안전법 (수입)

- **우라늄광과 그 정광, 토륨광과 그 정광**의 핵물질 신규 품목 **추가**
- 천연 우라늄 등 일부 핵물질은 허가 → 승인 대상으로 전환
- '한국방사선안전재단' → '**한국원자력안전재단**'으로 명칭 변경

□ 위생용품관리법 (수입)

- **물티슈용 마른 티슈, 종이 빨대, 일회용 팬티라이너** 등 신규 품목 **추가**

□ 의료기기법 (수입)

- **큐렛**(여드름 등 인체 조직의 획득 및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) 대상 **추가**

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(수입)

- **일회용 기저귀** 적용 대상 제외됨에 따라 요건 **삭제**
- **가정용 소형변압기, 전기용전기, 커피분쇄기, 빙삭기** 등 신규 품목 **추가**
- **공기주입식 물놀이 보우트,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** 등 **추가**
- 소용돌이용 전기욕조, 전기온장고 등 안전인증 → 안전확인대상으로 하향

□ 화학물질관리법 (수입)

- **암모니아, 파시비, 피비비** 등 화학물질 신규 품목 **추가**
- **디디티, 비산납** 등 함유량 명시 및 CAS 번호 **추가** 등 요건 일부 수정

2020.01.21

##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입안 계획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종자산업법 (수입)

- 대상작물 중 요건확인기관이 '한국생약협회장' → '산림청장' 변경

##### 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수입, 수출, 법령 신규)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수입, 수출)

-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야생 동·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의  
소관 법령을 '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로 이관

##### □ 약사법 (수입)

- 살서제, 살충제, 소독제 등의 소관 법령을 '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 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' 로 이관에 따라 **삭제**

##### □ 계량에 관한 법률 (수입)

- 수입요건 내용 오탈자 수정

##### □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 개선

-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 기준 실적산출기간 최근 3 → 1년 축소
- '수출입신고 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 건수가 월 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'  
조항 수정을 통한 유리한 기준을 선택가능하도록 함
- 연장 절차 마련을 통한 확대 기반 구축 (기존 : 승인일 ~ 3년 간 유효)

2020.01.21

##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입안 계획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□ 세관장확인대상 운영 관련 개선

- 전산망 연계,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추가, 필요시 관련기관 의견 청취
- 통관 단계 적발 실적·요건확인기관의 운영 및 사후관리 실적 고려를 통한 세관장확인물품 내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# ◇ 의견 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인순 사무관 (042-481-7841)  
관세청 통관기획과 공상권 주무관 (042-481-7895)
- 제출기한 : 2020년 01월 22일
- 제출방법 : E-mail ([holy@korea.kr](mailto:holy@korea.kr)), fax(042-481-7819)

##### ◇ 『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』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 [붙임]

##### ◇ 참고 링크

- 고시 별표 1 나 (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) 신구조문 대비표
- 고시 별표 2 나 (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) 신구조문 대비표

<http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mi=2897&nttSn=59319>

##### ◇ 시행일 : 2020년 1월

##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(생략)	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
가.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	가. 「마약류 관리-----	○ 현행 법령명에 맞게 띄어쓰기 반영
나. ~ 카. (생략)	나. ~ 카.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<u>타.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</u> <u>파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</u>	○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법령에 신규 세관장확인법령 중 국민안전과 밀접한 법령 추가 반영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	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7조의2(자율확인우수기업)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의2(자율확인우수기업) ① ----- 신청(연장)----- ----- 지정(연장)신청서를 제출(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) -----.</p>	<p>○ 자율확인우수기업 연장 신청 절차 마련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	
<p>④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</p>	<p>④ ----- 승인일(연장승인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)-----.</p>	<p>○ 자율확인우수기업 연장 신청 시 연장승인 유효기간 기산일 규정</p>
<p>제8조(확인요청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확인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	
<p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, 연계시기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함께 -----.</p>	<p>○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요청 시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는 근거 마련</p>



현 행	개 정	비 고
<p>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·요청내용·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<u>통관여건</u>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③ ----- ----- <u>통관여건, 전산망 연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</u>----- ----- . <u>다만,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○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결정 시 전산망 연계,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, 관련기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 마련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&lt;신설&gt;</p>	<p>⑤ <u>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적발실적,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운영 및 사후관리 실적, 통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	<p>○ 통관단계 적발실적, 요건확인 운영 및 사후관리 실적, 통관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관장확인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1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0</u> <u>년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재검토기한 개정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부 칙 (2020. 00. 00. 관세청 고시 제2020-00호)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u> <u>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<p>○ 부칙 신설</p>

현행		개정		비고
<b>【별표 1】</b>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		<b>【별표 1】</b>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
(1)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(생략)	(1) 「 <u>마약류 관리</u> ----- -----	○ (현행과 같음)	○ 현행 법령명에 맞게 띄어쓰기 반영
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동물 (나)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·식물 (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) (다) <u>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·식물</u>	○ (생략)     ○ (생략)	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동물 (나)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·식물 (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) (다) <삭제>	○ (생략)     ○ <삭제>	○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소관 법령이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삭제

현 행		개 정		비 고
(9) 「원자력안전법」 해당물품 (가) 핵물질  (나)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	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 ○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	(9) 「원자력안전법」 해당물품 (가) 핵물질  (나)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	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 ○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	○ 요건확인기관이 한국원자력 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 어 수정 반영  ○ 변경된 법령명 반영          ○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소관 법령이 「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 에 따라 물품의 범위와 구비 요건 추가
(12) 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	○ (생 략)	(12) 「농업생명----- ----- ----- -----	○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○ <신 설>	(14) 「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	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	

현행		개정		비고
<신설>	○ <신설>	(15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 (가) 원료물질·공정부산물	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	○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에 따라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구비요건 추가
<b>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</b>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		<b>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</b>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
(2)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(생략)	(2) 「마약류 관리-----	○ (현행과 같음)	○ 현행 법령명에 맞게 띄어쓰기 반영
(7) 「가축전염 예방법」 해당물품	○ (생략)	(7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-----	○ (현행과 같음)	○ 법령명 오류 수정

현 행		개 정		비 고
<p>(16) 「원자력안전법」 해당물품 (가) 핵물질</p> <p>(나)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</li> <li>○ <u>한국방사선안전재단</u>의 수입요건확인서</li> </ul>	<p>(16) 「원자력안전법」 해당물품 (가) 핵물질</p> <p>(나)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</li> <li>○ <u>한국원자력안전재단</u>의 수입요건확인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건확인기관이 한국원자력 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 어 수정 반영</li> </ul>
<p>(18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단,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)</p> <p>(가) 야생동물</p> <p>(나)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(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)</p> <p>(다) <u>생태계교란</u> <u>야생동식물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·군수·구청 장의 야생동물 수 입허가증</li> <li>○ 유역(지방)환경청 장의 멸종위기 야 생동·식물(국제 적 멸종위기종) 수입허가서</li> <li>○ 유역(지방)환경청 장의 <u>생태계교란</u> <u>야생동식물</u> 수입 <u>허가서</u></li> </ul>	<p>(18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다만,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)</p> <p>(가) 야생동물</p> <p>(나)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(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)</p> <p>(다) &lt;삭 제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·군수·구청 장의 야생동물 수 입허가증</li> <li>○ 유역(지방)환경청 장의 멸종위기 야 생동·식물(국제 적 멸종위기종) 수입허가서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서 문구 수정, 생태계교 란 생물이 「생물다양성 보 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사항 반 영</li> </ul>

현행	개정	비고
<p>(25) 「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</p> <p>(가) 의료기기</p> <p>(나) 동물용 의료기기</p>	<p>(25) 「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</p> <p>(가) 의료기기</p> <p>(나) 시험용 의료기기 등(시험용, 자가사용용,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)</p> <p>(다) 동물용 의료기기</p>	<p>○ 「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반영</p>

-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
-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

-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
-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
-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

현행		개정		비고
<p>(29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해당물품</p> <p>(가)석면함유제품</p> <p>(나)제조등 금지물질</p> <p>(다)안전인증대상제품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○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 서 또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사장의 확 인서</p> <p>○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 조 금 지 물 질 수입승인서</p> <p>○ 안 전 인 증 기 관 의 안 전 인 증 확 인 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</p> <p>○ &lt;신설&gt;</p>	<p>(29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해당물품</p> <p>(가)석면함유제품</p> <p>(나)제조등 금지물질</p> <p>(다)안전인증대상제품</p> <p>(라)자율안전확인 대 상물품</p>	<p>○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 서 또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사장의 확 인서</p> <p>○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 조 금 지 물 질 수입승인서</p> <p>○ 안 전 인 증 기 관 의 안 전 인 증 확 인 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</p> <p>○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</p>	<p>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해당물품 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물품의 범위 와 구비요건 추가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○ &lt;신설&gt;</p>	<p>(41)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</p> <p>(가)생태계교란 생물</p>	<p>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 의 생태계교란 생 물 수입허가서</p>	<p>○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세관장확 인물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구비요건 추가</p>



현 행		개 정		비 고
<신 설>	○<신 설>	(42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 물품 (가) 원료물질·공정 부산물	○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 신고 적합 통 보서	○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」 해당물품 중 원료물질, 공정부산물을 세관장확인물 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, 구비 요건 추가
<신 설>	○<신 설>	(43)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  (나) 살생물제품	○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승인통지서  ○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살생물제품 승인통 지서	○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을 세관장확인물품 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상법 령 및 물품의 범위, 구비요 건 추가

현 행		개 정		비 고
<신 설>	○<신 설>	(44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해당물품 (가) 이동식부탄연소기·이동식프로판연소기	○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입가스용품 요건 승인서	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해당물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구비요건 추가
<신 설>	○<신 설>	(45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해당물품 (가) 삼상유도전동기	○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확인서	○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해당물품 중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구비요건 추가

현 행		개 정		비 고												
<p>【별표 3】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</p> <p>가. 수입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허가신청</li> <li>○ 생태교란야생동식물 수입허가 신청서</li> <li>○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</li> <li>○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</li> <li>○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(18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 <td>○ 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(1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허가신청</li> <li>○ 생태교란야생동식물 수입허가 신청서</li> <li>○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</li> <li>○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</li> <li>○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</li> </ul>	(18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(생 략)	<p>【별표 3】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</p> <p>가. 수입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6) &lt;삭 제&gt;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(18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 <td>○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(16) <삭 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/ul>	(18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(현행과 같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이 불가하여 삭제</li> <li>○ 현행 법령명에 맞게 띄어쓰기 반영</li> </ul>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		
(1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허가신청</li> <li>○ 생태교란야생동식물 수입허가 신청서</li> <li>○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</li> <li>○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</li> <li>○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</li> </ul>															
(18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(생 략)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		
(16) <삭 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li>○ &lt;삭 제&gt;</li> </ul>															
(18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		비고
(19) 「사료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사료수입 <u>신고서</u>	(19) 「사료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사료수입 <u>신고</u>	○ 요건신청 대상업무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
(20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용기검사 <u>신청서</u>	(20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용기검사 <u>신청</u>	○ 요건신청 대상업무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
(38)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 신청	(23)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(생략)	○ 연번 수정
(39) 「농약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농약품목등록 또는 농약수입허가 확인 신청	(24) 「농약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(생략)	○ 연번 수정
(40)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목재제품 규격·품질 검사결과 통지 <u>확인 신청</u> ○ (생략)	(25)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<삭제>  ○ (현행과 같음)	○ 연번 수정, 규격·품질검사 신청 업무가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이 불가하여 대상업무 삭제
<신설>	○ <신설>	(26)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안전기준 적합 <u>확인 신고</u> 또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<u>승인신청</u> ○ 살생물제품 <u>승인신청</u>	○ 세관장확인법령 신규 지정에 따라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대상업무 추가

현 행		개 정		비 고
<신 설>	○ <신 설>	(27)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해당물품	○ 수입 가스용품 요건 승인 신청	○ 세관장확인법령 신규 지정에 따라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대상업무 추가 ○ 세관장확인법령 신규 지정에 따라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, 대상업무 추가
<신 설>	○ <신 설>	(28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해당물품	○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	
나. 수출물품		나. 수출물품		○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이 불가하여 삭제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
(7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허가신청 ○ 생태교란야생동식물 수입허가 신청서 ○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○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○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	(7) <삭 제>	○ <삭 제> ○ <삭 제> ○ <삭 제> ○ <삭 제> ○ <삭 제>	

현 행	개 정	비 고								
<p><b>【별표 4】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347 846 986"> <tr> <td data-bbox="174 347 344 735">수출입실적</td> <td data-bbox="344 347 846 735">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서,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이상인 경우 ※중소기업의 경우 50건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74 735 344 986">법규준수도</td> <td data-bbox="344 735 846 986">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이상인 경우 ※중소기업의 경우 85점이상</td> </tr> </table>	수출입실적	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서,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이상인 경우 ※중소기업의 경우 50건이상	법규준수도	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이상인 경우 ※중소기업의 경우 85점이상	<p><b>【별표 4】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82 347 1554 986"> <tr> <td data-bbox="882 347 1048 735">수출입실적 (요건확인 품목 실적)</td> <td data-bbox="1048 347 1554 735">-----, 최근 1년간 인증대상 법령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 요건을 구비한 수출입 신고 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 건수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0건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82 735 1048 986">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</td> <td data-bbox="1048 735 1554 986">관세청장이 정하는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4분기 평균 ----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85점 이상</td> </tr> </table>	수출입실적 (요건확인 품목 실적)	-----, 최근 1년간 인증대상 법령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 요건을 구비한 수출입 신고 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 건수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0건 이상	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	관세청장이 정하는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4분기 평균 ----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85점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적산출기간을 축소하고 신청인이 수출입실적 또는 요건확인 품목실적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소기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기준을 완화</li> <li>○ 법규준수도 확인 기간, 법규준수도 명칭, 중소기업 기준을 명확화</li> </ul>
수출입실적	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으면서,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이상인 경우 ※중소기업의 경우 50건이상									
법규준수도	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이상인 경우 ※중소기업의 경우 85점이상									
수출입실적 (요건확인 품목 실적)	-----, 최근 1년간 인증대상 법령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 요건을 구비한 수출입 신고 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 건수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0건 이상									
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	관세청장이 정하는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4분기 평균 ----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85점 이상									
<p><b>【별지1】 자율확인 우수기업 지정신청서</b></p>	<p><b>【별지 제1호 서식】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(연장) 신청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시 규정에 맞게 서식 번호, 띄어쓰기, 서식 명칭 수정</li> </ul>								
<p><b>【별지1】 내용 중 자율확인 우수기업 등록신청서</b></p>	<p><b>【별지 제1호 서식】 내용 중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(연장)신청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시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, 서식 명칭 수정</li> </ul>								

현 행	개 정	비 고			
<p>&lt;신 설&gt;</p>	<p>【별지 제1호 서식】 내용 중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80 347 1559 400"> <tr> <td data-bbox="880 347 1077 400">신청 구분</td> <td data-bbox="1077 347 1160 400">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</td> <td data-bbox="1160 347 1559 400">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</td> </tr> </table>	신청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	<p>○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(연장) 신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용 수정</p>
신청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장			
<p>【별지1】 내용 중 관세법제226조에 의한 <u>세관장확인물품</u> 및 <u>확인방법지정고시</u>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<u>자율확인 우수기업등록</u>을 신청합니다.</p>	<p>【별지 제1호 서식】 내용 중 <u>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</u> 및 <u>확인방법 지정고시</u>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<u>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(연장)</u>을 신청합니다.</p>	<p>○ 고시 명칭과 규정에 맞게 수정</p>			

- ※ 붙임 1.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출요건 신규대비표  
2.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입요건 신규대비표